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59 -  
“소음 걱정 없이 편안히 쉴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공약 발표

- 아파트 거주민 10명 중 9명 겪는다는 층간소음 스트레스, 보복 소음 등 갈등 심화도
- 층간소음 기준 및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 긴급중재서비스·층간소음 등급 인증제 도입, 소음차단형 주택 용적을 상향 추진 등 전방위적 층간소음 해결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국민 제안2호]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소확행 공약 59

## 층간소음 제로사회

1. 소음기준·현장진단 강화
2. 신고전화 112 긴급중재서비스 도입
3. 소음차단형 주택 용적율 상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59번째 소확행 공약이자 국민제안 2호로 ‘층간소음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이제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을 만큼 날로 심화되어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준 및 서비스, 대응 제도 등을 보완해 갈등 해결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다

틈이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4년에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걷는 소리’ 나 ‘뛰는 소리’ 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후보는 국민제안 사례를 소개하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관련 기준 정비와 서비스 도입 등을 공약하였다.

먼저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까다로운 현행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보다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해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측정방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층간소음 긴급중재서비스 대응도 공약했다.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 밖에도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으로 주택 거주 시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구조 도입 및 기술 개발 등도 제시했다. 소음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들로 층간소음 피해를 실거주자 개인이 오롯이 떠안는 현실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주자의 선택권 강화와 관련 업계의 소음저감 설계 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생활 속 문제에 국가 차원의 노력과 중재 역할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고 평가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 [설명자료]

### ① 층간소음 기준 강화

#### (1) (현황) 층간소음 기준 및 문제점

-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측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 / \*\*측정시간 동안 최댓값을 나타낸 소음

- (문제점)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소음인정기준이 높아, 소음기준 초과로 분류되는 경우는 극소수
  - 층간소음으로 접수한 146,521건 중 층간소음 인정사례는 122건 (0.08%)에 불과, 전체 대비 1%에도 못 미침(한국환경공단 제출, 노웅래의원실 자료)
  - WHO의 ‘환경소음가이드라인’ 은 주거살내 등가소음도(Leq)를 35로 제시 (우리나라는 43 Leq)

#### (2) (해결방안)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실생활 소음 반영

- (기준조정) 직접충격 소음 3~5dB 하향 조정(가령 낮 43db → 40db)

-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소음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개선
-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아이가 뛰는 소음’도 층간소음 기준치 아래인 40dB 수준인 점을 고려

○ (기대효과)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 강화된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권고·중재 조치 가능, 분쟁의 합리적 해결 기대

## ②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

### (1) (현황)

-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 후 민원인 불만족 시 외부전문가 진단 의뢰, 전문가 현장진단 및 소음측정 후 현장진단
  - 인터넷·전화 접수 → 전화면담 일정 조정 후 전화상담 → (전화상담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해결방안 제시, 민원인 불만족 시) 외부전문가 진단(소음측정 병행 가능) → 불만족 시, 환경분쟁조정위 이첩
- (문제점) 정부가 운영 중인 중재서비스의 절차 복잡, 대기시간 장기 소요 등의 문제로 국민 불편도가 높음
  - 갈등 중재 시 24시간 측정 서비스로 전환
  - 중재 서비스 강화: 현장 측정자료에 기반한 이웃 간 소통·상담 등 실효성 있는 중재서비스 강화 필요(2019년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만족도 59.4%, 노웅래의원실 자료)
  -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없는 등 실효성 미흡(5년간 분쟁조정위 중재건수 35건, 박상혁의원실 자료)

## (2) (해결방안)

### ○ (전문가 신속 방문 · 진단)

- 현장진단 정확도 제고: 소음기준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  
(예: 측정시간 1시간 이상 측정 → 24시간 측정 전환)
- 절차 간소화: 전화 상담 시 1차적으로 유형별 사례집에 기반하여 기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전화접수 → 전화상담, 2단계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현장진단까지 대기시간 최소화(현재 민원 접수 후 현장진단까지, 대기시간 길게는 수개월 소요)
- 관련 예산과 인원 확충 필요

### ○ (기대효과) 현장 측정자료에 기반한 이웃 간 소통 · 상담 등 실효성 있는 중재서비스 제공 가능

## ③ 층간소음 긴급대응서비스(전문가-경찰 긴급출동 서비스)

### (1) (현황)

- 환경부 운영 이웃사이 서비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운영
- (문제점)
  - 이러한 중재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으며 민원 접수부터 방문, 현장진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과정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극단적 이웃 간 갈등 초래
  -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없어서 분쟁조정위의 실효성 미흡(5년간

147개 분쟁조정위가 맡은 중재 건수 35건, 박상혁 의원실 자료)

- 사실상 국가의 중재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방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한 신고 접수 및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2) (해결방안)

### ○ (긴급출동)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

- 예: 별도 식별코드 111 부여(현재, 경찰청 신고전화는 112, 119, 110)

### ○ (기대효과) 층간소음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 전문가 동반 출동으로 단순 현장출동을 넘어 합리적 대안 마련

## ④ 층간소음 차단성능 등급공개

### (1) (현황) 소음 등 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분양 시 공개하고 있음

- (성능표시) 현재 주택성능등급표시 의무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표시(의무고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 소음, 내구성, 일조, 에너지성능 등을 등급화하여 최대 별점 4개로 표시,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운영 중
- (문제점) 건설 후 혹은 입주 후 알게 되는 층간소음은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나, 실거주자를 위한 정확한 층간소음 정보시스템 부재
- 중량충격음은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완공주택의 층간소음은 해결이 어려움(슬래브 추가나 강성보강은 안정성, 층고제한 등의 이유로 적용 불가, 리모델링 시 표면마감재 교체 등 부분적 개선 정도 가능)

- 아파트 분양 시 소음 정보가 공개되나
  - 1) 공고 확인이 어렵고(건설사 재량),
  - 2) 분양이 아닌 경우 거주지 이전 시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입주하는 상황,
  - 3) 정확한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 (사례) 입주예정 공공민간아파트 191세대 중 96%(184세대)가 실측등급 하락, 이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침(감사원, '19)

(2) (해결방안) 층간소음차단성능 인증제 도입, 층간소음 정보 상시 공개

○ (인증 공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주택분양 뿐 아니라 거주지 이전 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측정제도 및 측정방식의 선진화로 층간소음차단성능 인증제를 도입, 이에 기반한 층간소음등급을 명확하게 별도 표시
- ※ (사례) 국민권익위가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의 등급 표시를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2017)
- 층간소음인증 후 입주자를 포함한 실 거주자가 층간소음 정보를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 (기대효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정확한 실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건설사의 주택구조와 소음차단 성능등급의 종합적 개선 유인

⑤ 기둥식 구조와 같은 층간소음 방지형 설계 시 인센티브 부여

(1) (현황) 경제적 이유로 소음진동에 취약한 벽식 구조 주택이 대다수임.

- (구조)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의 공사 기간의 단축과 경제적인 논리에서 구조체의 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벽식구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



- (부실제품)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 및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될 정도로 부실 제품 남발

(국토교통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품질 점검 실시 결과)

- (측정방법 논란) 국제표준은 바닥충격음의 측정도구로 경량충격원-태핑머신 (Tapping Machine), 중량충격원-임팩트 볼(Impact Ball)을 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량충격원 측정도구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뱅머신 (Bang Machine)만 사용하고 있음.

(2) (해결방안) 한국 상황에 맞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설계, 공법, 측정방식 개선 필요

- (설계) 벽식 구조 중심에서 기둥식(라멘) 구조 활성화 등 종합적 주택구조 혁신

- 세대간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구조와 설비 기준에 대한 종합적 분석 기반, 차단성능이 높은 기둥식 구조 설계 인센티브 확대 등

- (공법) 충격음의 바닥 슬래브 전달을 최소화하는 바닥충격음 저감공법 및 바닥구조 혁신기술 개발

- 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규정(210밀리미터 이상, 멘구조는 150밀리미터 이상)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슬래브 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

## ○ (측정) 바다충격음 측정 및 평가방법 개발

- 사후확인제에서 도입 예정인 ISO 기준 ‘임팩트볼’ 측정방식을 포함, 향후 현장 실측 중심의 다양한 충격음 측정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필요

## □ Q&A

### Q1.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이웃 간 갈등만 심화되는 것 아닐까요?

☞ 층간소음은 큰 폭으로 민원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약 50% 증가),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1%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소음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측정을 할 경우 오히려 층간소음 원인 규명 등 갈등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음 발생의 다양한 원인과 소음을 느끼는 개인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음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 위주의 해결책보다는 이웃 간 소통과 중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Q2.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운 이유와 구체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의 소음의 근본적 원인은 사용되는 건축재료 특성 및 차단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시공에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

주택은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고려되지 않아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하며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슬래브 두께 추가나 강성 보강은 안정성, 층고제한 등의 이유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층간소음방지형 설계나 층간소음차단 효과가 있는 기둥식 구조 적용을 장려하는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방지를 고려한 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의 소음은 다양한 원인과 개인차로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아 기축주택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배려와 갈등중재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고성능 주택 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정보를 입주자가 거주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웃 간 중재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현장진단 신청건수(67,260건) 대비 실제로 현장진단 실시 비율은 0.7%(509건)로 현장진단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 [제안자 및 내용]

제안자	아이디명	lys****	닉네임명	*****
<p><b>[제안내용]</b></p> <p>내내 집 한채없이 전세, 월세로 살다가 지난 4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서 층간소음을 억제할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쉬는날이 곤역입니다. 층간소음 유발자와 건설사에 매 신고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과금액의 50%는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누구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수있는 나라를 소망합니다.</p>				